

현해기4 제 115 호

수 신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제 목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프로그램 안내

2015. 05. 19

1. 귀 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유침과 같이 보험 Program을 구성하여 안내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귀의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더불어, 폐사는 동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보험프로그램 운영 및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유 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프로그램 1부. 끝.

대표이사 박 찬 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계약자	대한항공패러글라이딩협회
피보험자	대한항공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 회원
담보위험	아래의 업무(Covered Business)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 Covered Business : 비행사전테스트 및 교육
보험기간	1년
보험조건	1)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olicy (Claims-made Basis) 2)Policy Territory and Jurisdiction : Korea only 3)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4)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5)All Costs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the L.O.L 6)Contractual Liability Excluded 7)Consequential loss excluded (losses such as loss of profits, loss of revenue, loss of production, loss of business opportunity, loss of data, and loss of anticipated savings or benefits) 8)War & Terrorism Exclusion Clause 9)Millennium Exclusion Clause 10)Extended Reporting Period : 60days 11)Claims Co-operation Clause(as attached) 12)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13)Asbestos Excluded 1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작업자재 및 설비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15)피보험자의 전문행위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규 글라이더 구입 24개월 경과후 1개월 이내 풍동 테스트검사 실시 - 24개월 초과된 글라이더는 검사후 12개월 경과 1개월 이내에 풍동검사를 필히하여 날개 원단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야함 - 테스트 결과 50sec 미만인 경우 해당 글라이더의 비행으로 비행시 보장하지 아니함 - 풍동테스트 관련 기관은 상기 피보험자가 정한 기관으로 제한 16)모든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은 제출된 설문서를 기초로 하며, 설문서상 해당 임원의 서명 날인이 안된 경우 동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함.
보상한도액	CASE A : 100,000,000원 - 1청구당 / 총보상한도액 CASE B : 100,000,000원 - 1청구당 / 200,000,000원 - 총보상한도액 CASE C : 200,000,000원 - 1청구당 /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CASE 1 : 3,000,000 원 - 1 사고당 CASE 2 : 5,000,000 원 - 1 사고당
보험료	CASE A-1 : 2,762,000원 CASE A-2 : 2,663,000원 CASE B-1 : 3,406,000원 CASE B-2 : 3,285,000원 CASE C-1 : 4,049,000원 CASE C-2 : 3,906,000원